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
----------	----

2018. 9. 19.(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형용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8년 08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08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09월 07일

-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형용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적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문구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제명, 각 장 및 조에 사용된 용어 중 “학자금 이자지원” 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으로 명확히 규정
- 한국장학재단의 신용보증계정 보증에 의한 금융기관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 삭제 (안 제2조)

- 충청북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시기와 계획에 따른 필요 경비의 다음연도 예산 반영을 명시 (안 제3조)
-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5조)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거주
 - 소득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 해당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9, 14조)
 - “부적절한” ⇒ “부적당한”, “해촉” ⇒ “위촉 해제”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도 정책기획관” 을 “도 기획관리실장” 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교육지원 담당사무관” 에서 “업무담당 사무관” 으로 함. (안 제12, 16조)

3. 검토보고 요지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201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 충북도의 이자지원사업은 2년(2011~2012년)동안 시행 이후 지원대상자 감소추세 및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등의 확대로 2013년부터 중단하였으나, 이후 2017년 하반기 도 내 시민사회단체의 사업 재개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8년 4월부터 지원을 재개함.
※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 중
- 사업재개에 따라 조례 내용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적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문구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제명, 각 장 및 조명, 조문에 사용된 용어 중 “학자금 이자지원” 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으로 변경함.

- 현재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은 타당함.

○ 안 제2조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신용보증계정 보증에 의한 금융기관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을 삭제함.

- 과거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신용보증계정을 통해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진행해 왔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학자금대출이 한국장학재단의 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된 바, 현행 조례의 제2조 제1호에 포함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학자금대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며, 같은 조 제4,5호에 명시된 “신용보증”,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p> <p>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u>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u>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4. “신용보증”이란 제3호의 도 지역 대학생이 법 제6조에 따른 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p> <p>5.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정의)</p> <p>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p> <p>4. (삭 제)</p> <p>5. (삭 제)</p>

- 또한, 제3호에서 “지역대학생”을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용어 정의를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3. “지역 대학생”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 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본인 또는 직계존속) 타 지역 고등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안 제3조에서는 학자금대출 이차지원계획의 수립 시기 및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원계획에 대한 통보 범위를 고등교육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을 부담하는 시·군까지 확대 명시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 사람까지로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음.
 - 충북의 경우 조례에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과거(2011~2012) 사업 추진 시,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대상을 소득 7분위까지로 제한하였었음.
 - 교육부의 한국장학재단이 2015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자격을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서 8분위 이하로 확대시행 중이라는 점과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의 지자체에서 소득분위 8분위 이하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학자금 이차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소득분위 : 매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을 고시함.

(2017년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월소득 인정액	134 이하	312 이하	402 이하	491 이하	580 이하	692 이하	804 이하	982 이하	1,295 이하	1,295 초과
평균 월소득 (자산평가 제외)	99	187	257	314	369	420	483	555	670	987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①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 제3호의 지역 대학생으로 한다.</p> <p>②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대학생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 도 시행계획 및 성과 (2011~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이자지원 대상 : 7분위 이하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자(재학생) - 지원실적 : 2년 간 6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학기) 123명, (2학기) 468명 · 2012년: (1학기) 34명, (2학기) 9명 	<p>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3. <u>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하는 사람</u>

○ 안 제8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는 당위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함.

- 현행 장학금 등이 필요한 수업료의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인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저소득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제외 한다” 는 당위규정을 “제외할 수 있다” 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함.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학자금 이자지원 중복금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p>	<p>제8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 안 제12조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도 정책기획관” 을 “도 기획관리실장” 으로 변경하였고,

- 안 제16조에서, 위원회 간사를 “교육지원 담당사무관” 에서 “업무 담당 사무관” 으로 변경한 것은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부서 명칭의 변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개정에 문제가 없으며,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적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2018년 충청북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접수현황
(2018. 7. 31. 기준)

신청지역	사업량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총 계	
		신청인원	접수완료	신청인원	접수완료	신청인원	접수완료
총 계	6,400	117	79	202	126	319	205
청주시	3,175	70	47	104	70	174	117
충주시	855	10	7	27	14	37	21
제천시	955	9	5	32	17	41	22
보은군	65	1	0	3	3	4	3
옥천군	160	7	6	2	1	9	7
영동군	340	3	3	10	6	13	9

증평균	125	5	2	0	0	5	2
진천군	230	8	6	9	4	17	10
괴산군	105	0	0	3	2	3	2
음성군	310	4	3	10	7	14	10
단양군	80	0	0	2	2	2	2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형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
----------	----

발의연월일 : 2018년 8월 28일

발 의 자 : 박형용, 박상돈, 심기보,
육미선, 이상욱, 최경천,
황규철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적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문구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 각 장 및 조에 사용된 용어 중 “학자금 이자지원” 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으로 명확히 규정
- 나. 한국장학재단의 신용보증계정 보증에 의한 금융기관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 삭제 (안 제2조)
- 다. 충청북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시기와 계획에 따른 필요경비의 다음연도 예산 반영을 명시 (안 제3조)
- 라.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5조)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거주
 - 소득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 해당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9, 14조)
 - “부적절한” ⇒ “부적당한” , “해촉” ⇒ “위촉 해제”
- 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도 정책기획관’ 을 ‘도 기획관리실장’ 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교육지원 담당사무관” 에서 “업무담당 사무관” 으로 함. (안 제12, 16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8 - 34 호

라. 협의 :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마.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 제외)을 말한다.
3.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군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와 시·군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금액·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의 충청북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은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3.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우선 지원대상) 도지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시 신청자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득 10분위 중 하위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을 중지한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모두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당한 경우

제3장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기획관리실장
2. 도의회 의원
3.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대학교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제1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충청북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의 대출이자 지원

3. 관련조문

- 가칭)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소요경비 산출

나. 추계 결과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384,000천원 (매년)

다. 재원조달방안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도비 40%, 시·군비 6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김 두 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384,0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1,920,000
도 비	153,600	153,600	153,600	153,600	153,600	768,000
시군비	230,400	230,400	230,400	230,400	230,400	1,152,000
세 출	384,0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1,920,000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384,0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1,920,000
재원 조달	384,0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1,920,000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153,600	153,600	153,600	153,600	768,000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230,400	230,400	230,400	230,400	230,400	1,152,000
기 타 (민간 자부담)						